

#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제주한라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라 한다)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적절한 교수·학습 환경을 제공하고,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“다문화가족 학생”이라 함은 결혼이민자와 ‘국적법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출생 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나 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학생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모두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서 수강하는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적용한다.

**제4조(교수·학습지원)** 본 대학교는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수·학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우선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지원
2. 기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수, 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

**제5조(대학생활지원)** 본 대학교는 다문화가족 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기숙사 등의 대학생활 지원
2. 다문화가족 학생 상담
3. 진로상담, 취업준비 지원 등의 진로지원
4. 취학편의 및 편의시설 지원
5. 기타 학생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

**제6조(심사청구)** ① 다문화가족 학생 및 보호자는 학업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본 대학교는 2주 이내에 지원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신상자료관리)** ① 다문화가족 학생 관한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.

**제8조(신고)** 다문화가족 학생은 입학 직후 소속 학과장에게 다문화가족 학생을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다문화가족 학생정보 제공)** ① 교무처는 효율적인 교수·학습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·강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② 다문화가족 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·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, 해당 교·강사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다문화가족 학생 지원위원회)** ①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·복지 지원의 기본방침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학생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  
③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되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**제11조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다문화 가족학생의 교수·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
2. 다문화 가족학생의 생활·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
3. 다문화 가족학생의 상담·진로에 관한 사항
4. 다문화 가족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5. 다문화 가족학생 인정에 관한 사항
6. 기타 다문화 가족학생 학습지원에 관련된 제반사항

**제12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  
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  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3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.

## 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 개정)